



평등 주택 권리법 (거주 차별에 관한)

Housing Discrimination

어떠한 차별들이 불법 입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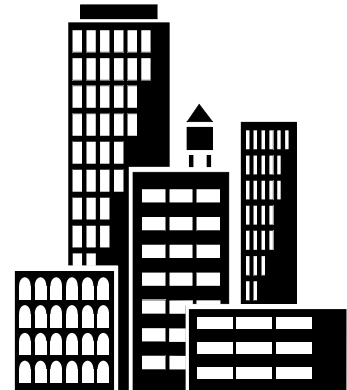
미네소타에서는, 거주에 관한 한 다음의 사항을 가지고 귀하를 남들과 다르게 대할 수 없습니다:

- 인종
- 가정 상황 (아이가 있는지 또는 임신하였는지)
- 장애
- 성별
- 정부보조유무 (MFIP, GA, SSI, 등등)
- 출신 국가
- 피부색
- 성적 기호
- 나이 (세인트 폴에 한해서)
- 종교
- 결혼 유무 (결혼을 안했는지, 이혼했는지)
- 교리 (또는 신념)

자주 일어나는 차별의 경우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

신청 및 신청 접수 거부

- 전화통화상으로는 아파트가 비어 있다고 말한 후, 집주인이 방문한 귀하의 피부색을 직접 본 후, “아파트가 나갔어요”라고 말하는 경우.
- 집주인이 “MFIP 나 정부보조를 받고 있다면 들어 올 수 없습니다.” 라고 알리는 경우.
-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가 월세를 내는데 아무 문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,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거부 되는 경우. 더 자세한 정보는 본 기관의: [Reasonable Accommodations](#). (영어만 이용 가능)
- 노인거주만을 위해 지어진 빌딩이 아니거나 4 명 이하의 공동 거주자가 있지 않은 거주구역에 집주인이 “어린이 금지”라고 말하는 경우.
- 아파트의 매니저가 신청한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경우. 예를 들어, 정부보조를 받는 신청자에게 월세의 세배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이 사실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에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.
- 종교적 이유로 신청접수가 제대로 된 수속을 밟지 못하는 경우.



다른 대우

- 거주지 관리인이 백인 세입자의 유닛을 유색인 세입자들의 것보다 먼저 보수해주는 경우.
- 매니저가 월세계약 위반 사항들에 대해 유색인 세입자들에게 좀 더 심하게 처벌을 가하는 경우.
- 간단히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면 장애인 (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)이 편히 거주 할 수 있음에도 바꾸지 않는 경우 (맹인 안내견등). 더 자세한 정보는 본 기관의: [Can I Keep a Pet?](#) (영어만 이용 가능)
- 타운 홈 모임(단체 및 협회)에서 귀하의 휠체어를 위한 등(램프)를 달아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. 더 자세한 정보는 본 기관의: [Reasonable Accommodations.](#) (영어만 이용 가능)
-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룰이 있는 경우 또는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거주구역의 첫 번째 층만을 세 주는 경우.



희롱

- 아파트 관계자가 원치 않는 데이트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귀하의 아파트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. 더 자세한 정보는 본 기관의: [Sexual Harassment in Housing.](#) (영어만 이용 가능)
- 아파트의 경비원이 방문객을 인디언이라는 이유로 남들과 다르게 대하는 경우.
- 이웃이 귀하를 인종차별이 포함된 모욕과 협박으로 거주구역에서 나가기를 요구하는 경우,.

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?

만약 당신이 신청한 아파트에서 위에 열거된 차별의 이유로 당신의 입주를 거부한다 의심이 된다면, 아래의 연락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.

또 다른 방법으론, 주변의 지인을 통해 같은 집주인에게 거주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방법을 쓰는 경우 그 집주인이 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십시오. 예를 들어, 만약 차별에 대한 의심이 인종에 관한 것이라 생각 된다면 다른 인종의 지인으로 하여금 신청을 해 보시고 더 나은 대우를 받는가 확인해 보십시오. 이러한 모든 과정,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과 당신의 지인이 대한 모든 이들에 대해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.

만약 거주 지역에서 부당한 대우와 모욕을 주는 행위가 있다면, 주인에게 편지를 쓰십시오. 이때 편지의 사본과 부당 및 차별 대우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시오.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증인을 확보할 수 있다면, 증인의 연락처를 가지고 계십시오. 부당 및 차별 대우가 시작된 후부터 일어나는 관련 일들에 관해 기록을 해 두십시오. 만약 차별 대우가 멈추지 않는다면, 또는 당신이 이로 인해 위험에 처한다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.

소송과 에이전시를 통한 고소장

차별을 멈추는 방법으로 소송을 이용하기도 합니다. 이러한 경우는 차별을 멈추기도 할 수 있고, 때론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아파트 신청 및 입주 거부 시 바로 대응하고, 모욕적인 대우에 대항, 또는 강제퇴거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론 소송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만약 당신의 소득이 적어 소송을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저희 리걸 에이드 오피스에 연락 주십시오.



소득이 적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:

거주 차별에 대한 주정부의 프로젝트에 전화하세요

The Housing Discrimination Law Project: (612) 334-5970

또는

Housing Equality Law Project: (651) 222-4731

위 기관들에 연락을 주는 것 이외에도 거주지 차별 금지 법안을 통해 주정부의 에이전시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에이전시들은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원하지 않습니다. 주 정부의 에이전시들이 차별이 있었음을 발견하는 경우, 양자간의 합의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 합니다.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, 당 에이전시들은 차별을 가한 쪽에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.

주 정부의 에이전시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:

MN Department of Human Rights

Freeman Building
625 Robert St North
St. Paul, MN 55155
Phone: (651) 539-1100 or 1(800) 657-3704
TTY: (651) 296-1283

MN Department of Human Rights – St Cloud

City Hall
400 Second St South
St. Cloud, MN 56301
Phone: (320) 650-3133

www.mn.gov/mdhr/

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(HUD)

77 West Jackson Boulevard
Chicago, IL 60604-3507
Phone: (800) 765-9372

www.hud.gov

어떠한 일이 있더라도,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대응하는 겁니다. 대부분의 경우, 차별이 존재한 날에서 1 에서 때론 2 년안에 소송이나 고소장을 내는 것이 유효합니다.

자료서는 법률 정보일 뿐, 법률적 조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.

본 자료서는 1 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. 업데이트 사항, 자료서 목록, 또는 다른 형식의 포맷에 대해서는 본 기관으로 요청해 주십시오.

© 2019 Minnesota Legal Services Coalition. This document may be reproduced and used for non-commercial personal and educational purposes only. All other rights reserved. This notice must stay remain on all copies. Reproduction, distribution, and use for commercial purposes are strictly prohibited.